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
2. 건 명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불 임 참 조
4. 검 토 의 견 : 불 임 참 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8조제4호).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하신 독립유공자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외에 별다른 지원시책이 없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하겠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한하여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전광역시립 의료시설의 빈약으로 인한 독립유공자 일반 환자 가료의 어려움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